#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459

발의연월일: 2022. 4. 29.

발 의 자:전봉민·강기윤·김도읍

김희곤 • 백종헌 • 안병길

이종성 • 이주화 • 정동만

조경태 · 황보승희 의원

(11일)

### 제안이유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진료, 보건행정, 보건사업을 위한 업무처리용 전자시스템으로서, 최근 보건소업무 증가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시스템의 전산화 범위가 진료 및실적 관리 중심으로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사업별로 시스템이 분리되어 있어 낙후된 정보화 시스템을 고도화할 필요성이 현장에서 지속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관별, 사업별로 분리되어 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서비스대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원활한 조사·처리 및 타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정보시스템 이용의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해당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대행기관에 대한 규정, 시스템 개편에 관한 부처 간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 항들을 정비함으로써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운영 목적을 관련 업무의 전자화에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로 확대(안 제5조제1항).
- 나. 타 정보시스템과의 전자적 연계 근거를 마련(안 제5조제2항 및 제4항).
- 다.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 및 절차 명확화(안 제5조제5항 및 제6항).
- 라. 지자체, 관계부처에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연 계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의무 신설(안 제5조제7항).
- 마. 지역보건법에서 정하지 않는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준용(안 제5조제8항).
- 바.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사항목 확대 및 정보요청 협조 및 거주지 방문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0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21조제2항).

- 사.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정보의 파기 규정 정비 (안 제22조제2항 및 제3항).
- 아.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의 누설금지 규 정 신설(안 제28조제4호).
- 자.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운영대행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변경 (안 제30조제4항).
- 차. 개인정보의 파기 또는 파기요청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마련(안 제34조제1호).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지역보건의료업무의 전자화)"를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이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보건의료기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 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능을"을 "지역보건의료 기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11조에 따른 기능 및 업무를"로,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료를 수집 · 관리 · 보유 · 활용(실적보고 및 통계산출을 말한다)할 수 있으며"를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ㆍ처리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 정기관, 지방자치단체"로, "단체에"를 "단체, 법인·시설 등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법인·단체의 장은"으로 한다.

제5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및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처 리하는 정보시스템
- 2.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 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 6.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건강검진자료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 7.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 8. 「치매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
-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

라 한다)에게 제공할 수 있다.

-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19조제2항에 따른 서비스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제30조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또는 의료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⑦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5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내용 및 방식과 시스템 추가 개발 비용, 기간 및 보안 등 시스템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소득·재산 등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를 "인적사

항·가족관계·소득·재산·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건강상태 등에 관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비스대상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법인·시설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 법인·시설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고 거주지 및 사실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장소를 방문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 중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을 "제20조제2항부터 제4 항까지에 따라 조사한"으로, "소득·재산"을 "소득·재산·건강상태" 로 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또는 의료인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제28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조에 따라 수집·관리·보유하거나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 제30조제4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2조를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하거나 파기 요청하지 아니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안 제5조(지역보건의료업무의 전자 제5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화)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 이용 등) ① -----보건의료기관(「농어촌 등 보 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이 제11조에 따른 기능 및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업무를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 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지역보 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 이 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운 하 이 조에서 같다)----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 ----- 자료 또는 정보 ·관리·보유·활용(실적보고 를 수집·관리·보유·처리할 및 통계산출을 말한다)할 수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지방자치단체-----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 단체. 법인·시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설 등----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 체, 기관·법인·단체의 장은

다.

- 1. ~ 3. (생략)
- ③ (생략)
- <u><신 설></u>

- -----.
- 1. ~ 3.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 ④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및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 하여 활용할 수 있다.
-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 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자료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 2.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률」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제1항 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 스템
-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제1항 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신 설>

<신 설>

- 6.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건강검진자료 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 7.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 8. 「치매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치매정보시스 템
-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공할수 있다.
-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5 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신 설>

<신 설>

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 를 제19조제2항에 따른 서비스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동의 를 받아 제30조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 관련 기관 • 단체 또 는 의료인에게 제공할 수 있 다. 이 경우 이용 목적을 고려 하여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제 공하여야 한다.

⑦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이 제5조에 따라 지역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하 거나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그 목적, 내용 및 방식과 시스템 추가 개발 비용, 기간 및 보안 등 시스템 변경에 관 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정 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 항은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 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투 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 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 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 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 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 1. ~ 5. (생략)
- ② ~ ⑧ (생 략)

제20조(신청에 따른 조사) ① 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 신 청을 받으면 서비스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단 서 신설>

<u>· 군수 · 구청장</u>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세20조(신청에 따른 조사) ① -
<u>인적사항·가족관계·</u>
소득・재산・사회보장급여 수
급이력・건강상태 등에 관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 조사하
고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서비
고 처리할 수 있다. <u>다만, 서비</u> 스대상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한
고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서비 스대상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고 처리할 수 있다. <u>다만, 서비</u> 스대상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한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실시 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의3에 따른다.

<신 설>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의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 · 가족관계등 록전산정보・금융・국세・지방 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 민연금 ·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 상보험·보훈급여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 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법인 · 시설 등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 체, 법인·시설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 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 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고 거 주지 및 사실 확인에 필요한

- 제21조(서비스 제공의 결정 및 실시) ① (생 략)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때 제20조제2항 에 따라 제출된 자료·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하여 평가 한 서비스대상자와 그 부양의 무자의 소득·재산 수준이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서비스 제공 의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 ③ (생 략)

제22조(정보의 파기) ① (생 략)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에 따른 정보가 지역보건의 료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복지 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 보시스템에 수집되어 있는 경 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정보의 파기를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

<u>관련 장소를 방문할 수 있다.</u>
제21조(서비스 제공의 결정 및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20조제2항</u>
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조사한
<u>소득·재산·건강상태</u>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정보의 파기) ① (현행과
같음)
②
<u>「사회보장기</u>
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
<u> 장정보시스템</u>

다.

<신 설>

제28조(개인정보의 누설금지) 지 저 역보건의료기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 를 포함한다)의 기능 수행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지역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였거나 구축 · 운영하고 있는 자(제30조제2항 및 제4항 에 따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는 업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 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 여서는 아니 된다.

<b>.</b>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의료인은 제5조제
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
면 파기하여야 한다.
제28조(개인정보의 누설금지)
1. ~ 3. (현행과 같음)
4. 제5조에 따라 수집・관리・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① ~ |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① ~ ③ (생략)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 ④ -----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사회복지 다.

⑤ (생략)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34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 2. (생략)

② (생 략)

보유하거나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

③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으로 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 |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담기구에 대행하게 할 수 있 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⑤ (현행과 같음)

따른 공공기관-----.

1. 제22조를 위반하여 정보 또 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하 거나 파기요청하지 아니한 자

2. · 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